

외무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

(홍기원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14등급 공관장과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
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(안 제26조제4항·제7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
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